

2023년도 문화재위원회

제3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자료

▣ 회의일시 : 2023. 4. 13. (목), 14:00

▣ 장 소 :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회의실

문 화 재 위 원 회

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

1.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10조에 따라,
 -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,
 -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,
 -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(법인의 상근·비상근 임직원 포함)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,
 -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,
 -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며,
 -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.
 -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.
2.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3. 아울러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9조 및 「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」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
4. 「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」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-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「한양의 수도방어성곽」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 | |
| 2 | 「대곡천 암각화군」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 | |

【검토사항】

-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3 | 「한국의 갯벌」 (2단계)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검토 | |
| 4 | 공주 신관동 주변 주상복합 건설 관련 세계유산 영향분석 검토 | |

심 의 사 항

1. 「한양의 수도방어성곽」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

가. 제안사항

「한양의 수도방어성곽」(신청명 : 한양의 수도성곽)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서울특별시에서 「한양의 수도방어성곽」(신청명 : <한양의 수도성곽 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>)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로 신청하였음
- 본 위원회 2022년 제6차 회의(2022.12.8.)에서 우선등재목록에 “선정”됨에 따라, 등재신청후보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

※ 참고 :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예규) 제10조, 11조

제10조(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신청) ① 시·도지사 또는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우선등재목록 유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하여 줄 것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) ① 문화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접수된 국문 등재신청서 초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유산을 등재신청연도 전 전년 7월 3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.

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중 제3항에 따른 평가과정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신청연도 전년 7월 31일까지 최종 등재신청 대상 1건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종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유산의 후보 지위 유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.

③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 말까지 1차 보완사항을 통지하며, 전년 3월말까지 2차 보완사항을 통지한다. 해당 시·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1, 2차 보완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2 「대곡천 암각화군」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

가. 제안사항

「대곡천 암각화군」(신청명 :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 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)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울산광역시에서 대곡천 암각화군 (신청명 <반구천 일원의 암각화 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)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로 신청하였음
- 본 위원회 2022년 제6차 회의(2022.12.8.)에서 “보류”됨에 따라, 등재신청후보로 선정할지 여부를 재심의 하고자 함

※ 참고 :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예규) 제10조, 11조

제10조(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신청) ① 시·도지사 또는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우선등재목록 유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하여 줄 것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) ① 문화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접수된 국문 등재신청서 초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유산을 등재신청연도 전 전년 7월 3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.

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중 제3항에 따른 평가과정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신청연도 전년 7월 31일까지 최종 등재신청 대상 1건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종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유산의 후보 지위 유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.

③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 말까지 1차 보완사항을 통지하며, 전년 3월말까지 2차 보완사항을 통지한다. 해당 시·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1, 2차 보완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검 토 사 항

3. 「한국의 갯벌」(2단계)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검토

가. 제안사항

「한국의 갯벌」(2단계)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2021년 ‘한국의 갯벌’(서천, 고창, 신안, 보성·순천) 세계유산 등재시 세계유산 위원회의 ‘권고’에 따라 OUV 강화를 위한 2단계 확장등재 추진으로, 권고사항인 9개 갯벌* 중 전라남도 무안 갯벌, 고흥 갯벌, 여수 갯벌(3개소)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에서 신청한 「한국의 갯벌」(2단계)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검토 받고자 함 ※ 확장 등재

* (인천(강화, 영종도, 송도), 무안, 군산, 고흥, 여수, 화성, 아산·당진)

4. 공주 신관동 주변 주상복합 건설 관련 세계유산 영향분석 검토

가. 제안사항

충남 공주시 소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(공주 공산성) 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사업에 대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(공주 공산성) 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신청인은 '공주시'의 요청에 따라 '세계유산 협약'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(118bis)'에 의거 세계유산영향평가(HIA_Scoping Report 단계)를 실시하였고, 해당사항에 대한 문화재청의 검토의견을 요청('23.2.27.)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(1) 신 청 인 : (주)씨앤디

(2) 세계유산 개요

- 세계유산(구성요소)명 : 백제역사유적지구(공주 공산성)
- 문화재명 : 공주 공산성
- 소 재 지 : 충남 공주시 금성동 53-12